

현안분석 2012-0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2-0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 영 미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legislative Status and Tasks
Concerning the Old-age Income Security for the
Self-employed

연구자 : 김영미(초청연구원)
Kim, Young-Mi

2012. 8.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자영업자를 위한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으로 다층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도입예정인 개인형 퇴직 연금을 통해 자영업자 스스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외국의 법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보장의 국제적 성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함. 또한 국내 제도개선의 방향성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자영업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규정이 없음.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의미함.
-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자영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자’를 합쳐서 총칭하고 있음.
-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통일적 개념설정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고용주를 포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영세자영업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규정하는 영세사업자, 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사업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2층 및 3층의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2017년에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가입이 허용됨. 따라서 외형상 공·사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연금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자영업자는 전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이러한 부담률이 영세자영업자에게 보험가입 회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는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부담 보험료의 1/2 내지 1/3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액에 해당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영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나 연금크레디트제도를 통한 최저소득보장과, 국가이충연금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지향함. 사적 연금에 대한 의존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규제의 강화를 수반하고 있음.
- 독일의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법정연금 가입의무를 인정하고, 고소득의 자영업자는 사적연금인 뮌헨연금을 통해서 보장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함. 독일정부는 2012년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법정연금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은 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확대와 자영업자 가구의 무급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시행 예정인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전체 자영업자 중 56.6%가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자영업자는 연간소득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전액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 적정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국민연금은 40%, 퇴직연금은 22%. 개인연금은 8%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전망함.

-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키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수반되어야 함.
 -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기서 자영업자와 관련한 공적 공제제도를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 제고, 즉 보험료 선납제를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의 제3층으로서의 개인연금, 즉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의미함. 보험료는 100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전액 개인의 부담으로 하며,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됨. 이러한 소득공제혜택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및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사실상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함.
 -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액에 따라 산정됨.
 - 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다층노후소득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제를 개선함.
-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의 공·사연금 가입을 유도함.

▶ 주제어 : 산업기술,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적 공제제도, 소득공제, 근로장려세제.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The current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self-employed consists of multi-layered programs in appearance. However, in fact, over 40% of the self-employed are not member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us, hidden in the blind spot.
-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government support which should enable the self-employed to prepare themselves for likely poverty and to live their stable lives in later years by utilizing National Pension, Private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planned to be implemented).
- The study also aims to grasp the internationally oriented tendency and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in order for Korean policy maker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system improvements.

II. Major Contents

- The definition of the self-employed has not been articulated by relevant laws. It generally means any business operator, not as an employee.
-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the self-employed is not considered an employee but an business operator.
- The ‘Owner-Operator’ used in surveys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the generic term for the self-employed which means both employee-hiring ‘employer’ and, ‘individual proprietor’ working alone without employee or aided by unpaid family members.
- In relation with social insurance laws, a comprehensive concept of the self-employed is to be established. This study defines the self-employed as the concept for the generic term implying any ‘one-man business operator’, the unpaid family member and the employer.
- The scope of the small-scale self-employed can be matched with the small-scale business as defined in the Value-Added Tax Act, i.e. any business with the annual sales under 48 million Korean Won coming under the category of the ‘simplified taxation business’ and ‘tax-exempt business’.

-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of Korea consists of the National Fund as the first layer, Retirement Pension and Private Pension, as they are a part of personal pension system, as the second and third layers. In 2017, the self-employed will be allowed to take out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Then, the multi-layered frame of the Old Income Security System shall be completed formally and institutionally comprising both public and private pensions.
- The rate of Pension Premium is 9% of the base monthly income and the self-employed should pay all the premium by themselves. This high level of rate serves as the cause for the small-scale self-employed to avoid joining the pension system.
- The employees and the business owner of any business of which workers are under 10 persons can be subsidized the half to 1/3 of the pension premium to be paid according to the monthly average income.
- Such subsidy of pension premium as stated above is not applicable to the small-scale self-employed whose income is equivalent to the monthly average income level eligible for the subsidy.
- In U.K.,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self-employed is basically directed toward the minimum income security with basic pension or pension credit system, and toward the income security for the lower income group

through national second-layer pension system. It presents a strong dependence on personal pensions and, at the same time, requires a reinforced national regulation.

- In Germany,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self-employed consists of two ways; as to the low-income self-employed, the obligatory subscription to legal pension is actually allowed, and as to the high-income self-employed, the income security should be guaranteed by Rürup pension, a kind of personal pension. In 2012, German government prepares a pension reformation policy to impose the obligatory subscription to legal pension on the self-employed.
- In Korea, the improvement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has been made mainly to expand the subsidy of the pension premium for the small-scale self-employed and to induce their unpaid family-member workers to join the pension and then pay the equal minimum premium.
- As for the personalized retirement pension planned to be implemented, 56.6% of total self-employed were reported in a survey to be interested in joining it. The self-employed should pay all the premium by themselves at the rate of 8.3% of the annual income based on their income report.
- Provided the substitution rate of the appropriate income is based on pension subscription period for 40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 subscription rate of the self-employed to National Pension should reach at least 40% level, to retirement pension 22%, and to private pension 8%.

- In order for the self-employed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subscription to pension system, to get increased economic incentives, and to be guided to join the personalized retirement pension, the related legislation and enactments should be accompanied.
 - The necessity of special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ized retirement pension for the self-employed is raised. In such legislation, it is considered that an Official Mutual Aid system for the self-employed can be established and gradually absorbed to such pension system.
 -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status of the self-employed, it is necessary to offer them a flexible payment of pension premium which, for them only, allows to pay freely, to some extent, without limiting the allowance of the advance payment of the premium according to a certain age level.
- In accordance with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ersonal annuity savings eligible for the tax favor means the private pension as the third layer of the old-age security, i.e., the taxation-qualified private pension. Premium can be determined within the maximum limit of Korean Won 1,000,000 and should be paid totally by individuals and the favor of income tax dedu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annual maximum limit of Korean Won 4,000,000. The limit of income tax deduction should be increased continually.

- In relation with the identification of income of and the subsidy of the pension premium for the self-employed, the utilization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ince it is functioning as a part of social safety net, being a de-facto work-related income-supporting program.
- The payment of EITC to the household of worker or business operator(e.g., insurance solicitor, tradespers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dependent children, total income and business income.
- In connection with the subsidy of the pension premium, the utilization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could get the basis that the reported income of the self-employed can be effectively identified.

III. Expected Effects

-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multi-layered policies for old-age income security is to be planned and improved. And the improvements in legal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the purpose of such establishment.
- In order to prevent the old-age poverty for the self-employed, it is required that income security system be better organized and the related legislation and enactments should be followed to improve the status.

□ In response to the ageing population,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 labor market and economic situation, it is expected to guide and lead the self-employed in the blind spot of National Pension to join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s.

➤ Key Words : Old-Age Income Security, Self-employed,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Private Pension, Official mutual aid system, Income tax deduction,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2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3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6
제 2 장 자영업자와 노후소득보장체계	29
I. 자영업자의 개념 및 범위	29
1. 자영업자의 개념	29
2. 자영업자의 범위	30
3. 소 결	36
II.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37
1. 의의 및 필요성	37
2. 사회보장체계의 형성과 노후소득보장	38
3. 현행법상 노후소득보장체계	40
4. 재정방식	41

제 3 장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43
I. 자영업자 현황	43
II.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44
1. 국민연금	44
2. 퇴직연금	51
3. 공적 공제제도	56
4. 개인연금	57
제 4 장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63
I. 영 국	63
1.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3
2. 자영업자 관련 현황과 개념	65
3.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 현황	68
4. 제도의 한계와 최근 개혁동향	76
II. 독 일	77
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77
2. 자영업자 관련 현황과 개념	79
3.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 현황	84
4. 제도의 한계와 최근 개혁동향	91
III. 시사점	93
1. 영 국	93
2. 독 일	95

제 5 장 문제점 및 개선과제	97
I. 자영업자의 개념규정	97
1. 문제점	97
2. 개선과제	97
II. 국민연금법의 개선	98
1. 문제점	98
2. 개선과제	99
III. 사적연금 관련법의 개선	100
1. 공·사연금제도의 총괄보장	100
2.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102
3. 사적연금의 활성화와 세법개정	104
4. 근로장려세제의 활용과 세법개정	108
제 6 장 결 론	113
참 고 문 헌	115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관련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주로 내수경기에 의존하는데 반하여 최근 경제성장은 수출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 역시 자영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소매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전문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도시빈민계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국적 기업의 확대 역시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가속시킴으로써 이들의 경영난 및 경쟁력 상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산업구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데,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임금근로자화’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상승할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자영업자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비자발적 자영업자), 즉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많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감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의 평균연령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고, 사적연금보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생계보호는 일차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노후빈곤의 방지와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도입 당시 선별적 제도로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나, 1999년 도시자영업자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보편적 제도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현행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법적으로 제1층의 국민연금과 제3층의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부터 제2층의 퇴직연금에의 가입이 허용됨으로써 3층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틀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양대 집단의 하나가 자영업자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다수 저소득 자영업자는 취약계층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를 퇴직연금으로 보충하는 형식으로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률상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보장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가입을 증가와 보험료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를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득능력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지속적인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창업지원 보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자영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20~30대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하여 스스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자영업자들이 공·사연금에 가입하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이 되는 공·사 연금제도가 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일반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자영업자와 관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국제적인 사회보장의 경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보장에 의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토대로 하는 영국과 사회보험에 의한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기초로 하

는 독일을 선택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양대 체계를 형성하는 국가들에 있어서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법제 현황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 사회보장의 국제적 성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개선의 방향성 수립에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성숙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법제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개선과제들이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자영업자에 관한 실태파악은 우선 공·사 연금에 모두 가입하여 다층의 노후보장 혜택을 누리는 다층보장형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 현황을 중심으로 한다.

다층보장형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제조업과 음식 도·소매업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은 증가하지만 다층보장형 자영업자의 비율은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2005년 이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의 소득비례형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완성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0층을 구성하는 공공부조형을 포괄하여 다층의 보장체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층의 보장체계에서 자기기여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해당되는 소득비례형 연금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정된 노후를 예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기여가 아닌 일반세제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논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3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법 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노후보장의 제2층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은 2017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자영업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때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3층의 노후보장제도가 완비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주로 퇴직연금규정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다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3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를 추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노후보장의 제3층을 구성하는 현행 개인연금은 세제적격과 부적격,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한하여 검토한다. 이는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사적연금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보장의 실효성이 검토되고 개선과제가 제기됨에 있어서 연금의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이 주로 다루어진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정책 및 입법사항을 연구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외 선행연구 및 현행 노후소득보장에 관련된 정책 및 법령을 조사·분석하는 문헌조사방법론을 취하여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국가 및 복지국가로서 노후소득보장을 오랫동안 제도화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선진외국, 특히 영국과 독일의 입법정책 및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다. 이를 통해 현행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보장법의 글로벌화 경향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제1장 서론을 제외한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의 자영업자 사회보장에서 자영업자에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필요한 보호범위 내에서 개념설정을 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한다. 제3장의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에서 기존의 통계 및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의 각 층별로 구분하여 현행 제도를 살펴본다.

제4장의 외국의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한 영국과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한 독일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다루게 된다. 여기에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고, 제도상의 한계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최근 동향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5장의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제에서는 앞의 장(제2, 3, 4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마지막 제6장에서 본 연구의 최종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개선과제의 실현을 전망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제 2 장 자영업자와 노후소득보장체계

I. 자영업자의 개념 및 범위

1. 자영업자의 개념

자영업자에 관한 법률상 정의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가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그 근로실태를 분석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지입제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건설기계 또는 레미콘 운전자 겸 차주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 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화물운송사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비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는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대여업을 인정함으로써 지입제는 아니지만 등록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차주가 운전자로 운수업에 종사할 경우 근로자성은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을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등록차주가 개별대여업을 할 경우 차주개인은 명백히 사업주, 즉 사업자가 된다.¹⁾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자영업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영업주는 종업원인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자’를 합쳐서 총칭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1)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2, pp. 112-113.

혼자서 일하는 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를 포괄하는 ‘자영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영자는 전문가 및 프리랜서 등 경제력이 있는 자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영세자영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통상 전자의 경제력이 있는 자는 고소득자로, 후자의 영세자영자는 저소득자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밖에 ‘자영업종사자’라는 표현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는 법적인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편의상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개념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업자, 사업주 내지 고용주를 포함하여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통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자영자 중에서 혼자서 일하는 자는 ‘1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돕는다.

2. 자영업자의 범위

1) 영세자영업자의 인정범위

정부정책대상 집단으로 영세자영업자, 즉 영세사업자를 구분할 때, 주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영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²⁾ 노동부의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

경우에도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다. 다만 노동부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삽입하였고, 노동부고시(제2005-50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³⁾

그러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지원은 실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일부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에 따라 영세성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영세자영업자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자영업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정의할 수 있다.⁴⁾

2) 자영업자로서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청은 자영업자라는 용어 대신에 ‘소상공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징수된다. 한편,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면제, 간편한 세금계산, 장부작성의무, 신고절차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매년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다.

3) 이승렬/박찬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2008, p. 8.

4) 이승렬/박찬임, 전게서, p. 13.

항에서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며,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⁵⁾

따라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사업자 등록자)를 말하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자영업주와 비교하면, 상시근로자수와 더불어 사업장등록증 보유라는 기준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고용주의 92.2%와 자영자의 52.5%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사업장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주는 자영업주 전체의 대략 62.4%에 해당한다.⁶⁾

궁극적으로 본고에서 설정하는 자영업자 개념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청이 관할하는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이외 업종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자영업자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의 의

노동시장에서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서비스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 종속근로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노무제공영역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ILO는 종속적위임자(dependant contractor) 또는 유사

5) 이승렬/박찬임, 전게서, p. 7.

6) 이승렬/박찬임, 전게서, p. 8.

근로자(employee assimilated worker), EU는 경제적 종속근로자(economically dependant worker), 독일은 유사근로자(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영국은 노무제공자(worker)로 부르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특별한 명칭은 없으나 특수형태직군으로 지정하여 개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이 유사근로자 또는 준근로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된 개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지칭되고 있다.⁷⁾

궁극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종속적 지위에서 제공하는 등 노무제공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⁸⁾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수형태근로가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자들은 노동관계법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위탁계약, 도급계약 등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계약관계를 부인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통제 하에서 노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 측은 근로자로 고용될 때의 장점과 자영업자로 취업할 때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책임 하에 일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한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자영업자로 분류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해당업종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입이 감소하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대우받고자 하는 요구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⁹⁾

7) 하갑래, 전계서, 2012, p. 902.

8) 다만,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기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산재법 제125조 제1항); 하갑래, 전계서, p. 912.

(2) 주요직종과 근로자성의 부정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에는 대표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보호대상으로 논의되는 4가지 직종으로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및 레미콘자차기사가 있다. 이 중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가장 강한 면이 있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대체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¹⁰⁾

판례나 행정해석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로자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직군이나 종사자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위탁수금원, 쿼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운송차주, 덤프기사, 컨테이너기사, 프로선수, 연예인, 간병인 등이 해당된다.¹¹⁾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보호

① 특 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록 경제적인 종속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영업자(자영인) 신분’임을 전제로 한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공통된 보호제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

9) 하갑래, 전계서, p. 902.

10) 하갑래, 전계서, pp. 903-904; 판례는 학습지교사는 위탁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급실적’처럼 객관적으로 나타나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이유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다(대판 1996.4.26., 95다20348).

11) 하갑래, 전계서, pp. 906-908.

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비롯된 특성 때문인데, 우선, 하나의 범주로 보기에는 직군이나 근로자들이 너무 다양하다. 둘째로 하나의 직군 안에서도 노무제공의 형태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로 법령이나 제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요건을 피할 수 있도록 계약형태가 변형되는 ‘시장의 반응’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도 경기 변동에 따라 그 요구가 달라진다.¹²⁾

② 보호의 필요성

노동관계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본적 권리에 상당한 부분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성격이나 노무제공 형태를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¹³⁾

특수형태근로는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근로시간제한, 주휴일부여, 휴일근로, 연장근로, 휴업급여 지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모성보호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의 사업자 의존성을 고려한다면 ‘단체’에게 단결권 또는 교섭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자영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고, 단체가 용역 또는 노무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고 그 조건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체의 교섭행위에 대해 동법 제19조 및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20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

12) 하갑래, 전계서, p. 909.

13) 하갑래, 전계서, p. 912.

14) 하갑래, 전계서, p. 914.

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산재법 제 125조).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산재법 제1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5조).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동 조항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⁵⁾

3. 소 결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업자, 사업주 내지 고용주를 포함하여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고소득자영업자’와 ‘저소득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후자의 경우 일정한 범위를 특정하여 ‘영세자영업자’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영세성을 판단하는 일정한 범위는 통상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나 월평균소득 150만원 미만 또는 사업장 규모 5인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자는 ‘자영자’ 대신 ‘1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개념설정에 비추어 보면,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이외 업종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사회보장법에서는 입법에 의해 해결이 바람직하다. 즉 사회보장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15) 하갑래, 전게서, p. 1012.

규정을 둠으로써 그 보호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성의 유무는 결국 사용자의 부담여부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사회보장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II.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1. 의의 및 필요성

오늘날 노후소득보장은 노령에 의한 퇴직으로 소득이 상실될 때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을 원인으로 한 소득보장인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중에서 주로 공적연금보험을 다룬다.

이러한 공적연금보험은 노령, 사망, 장애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집합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들의 소득활동 중단을 대비하여 발전한 제도인 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들이 공적연금보험의 가입범위 밖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는 과거 자영업자들이 주로 자영농이나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부유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취약한 집단으로 전락하면서, 장기실업이나 만성빈곤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특히 농어민의 경우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일찍 부각되면서 국가에 의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¹⁶⁾

16) 이승렬,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2008, p. 41.

이러한 국가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전제로 한 기존의 소득보장체계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정책으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또한 근로자성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실업이나 노령에 따른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자영업자는 자신이 경영을 책임지면서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임으로 그 위험부담도 스스로 수인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자영업자들에게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구직수당이나 실업수당의 지급 및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일한 취지에서 자영업자의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의 위험도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공적연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체계의 형성과 노후소득보장

1) 사회보장체계의 형성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는 자영업자의 규모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우선 사회보장체계를 크게 보편적 체계와 선별적 체계로 구분하여 볼 때, 전체 시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체계 하에서 자영업자는 기존의 사회보장체제로 용이하게 포섭될 수 있다. 복지제도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선별적 보장체계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직종 및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구분됨으로 자영업자를 포괄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측면을 보인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적고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에서는 자영업자가 기존 제도에 포섭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선별적 사회보장체계 하에서는 기존 제도에 포섭되기가 어렵고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소득이 불안정함으로 보호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한 점에 기인한다.

2)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노후소득보장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식을 살펴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사회보장의 일반체계에 병합하거나 자영업자만을 위한 일반체계 또는 자영업자 집단을 위한 범주적 체계로 구분된다.

(1) 사회보장의 일반체계

보편적 혹은 일반적 사회보장제도는 일하는 모든 집단이나 전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가 동일한 체계 내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일반체계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직업이나 인구집단에 따라 구조적, 조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하에서 기초보장, 관리구조, 재정체계는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러한 체계를 따르는 국가는 초기에는 임금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나 점차 강제보험방식이나 임의보험방식으로 자영업자 및 일반 국민에게로 보호의 범주를 확대하여 전체 국민을 같은 제도의 틀에 포섭하고 있다. 이때 같은 제도의 틀이 모든 사회보험료율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¹⁷⁾ 이러한 국가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보험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 없이 전체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7) 이승렬 외 4인,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I)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2009, pp. 191-194; 이러한 체계를 갖는 유럽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이 있다.

(2) 자영업자를 위한 일반체계

자영업자만을 위한 일반체계는 전체 자영업자를 하나의 체계로 포섭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모든 직업 범주가 하나의 사회보장체도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고유한 관리운영체계와 독립된 재정체계를 갖추며, 직업군에 따라 자영업자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즉 공적연금체계 내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분리·운영된다. 예컨대 벨기에의 연금제도가 이러한 체계를 취하고 있다.

(3) 자영업자를 위한 범주적 체계

자영업자를 위한 범주적 체계는 자영업자의 보호제도를 그 직업의 범주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체계는 직업집단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농민과 자유전문직이 고유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저소득자영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에서 배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기술자, 상공인, 변호사 및 기타 자유직 등 직종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¹⁸⁾

3. 현행법상 노후소득보장체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장의 일반체계 내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1층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2층 및 3층의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며, 0층의 무기여 연금에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8) 독일,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이 이러한 범주체계를 따르고 있다.

있다. 이처럼 외형상 공·사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노후소득보장의 제1층을 구성하는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기여를 전제로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로써 국민연금 외에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이 특수직역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은 직역별로 구별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의 제2층인 퇴직연금은 2005년 기존 퇴직금제도에 추가된 형태로 도입되었고, 2017년부터 자영업자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의 제3층을 구성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1994년 처음 도입되었고, 2000년 개정으로 2001년부터 개인연금저축상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표 1〉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	2017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근로자	자영자	비경제활동인구

4. 재정방식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은 사회보장체계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부담방식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재

정이 충당되는 비스마르크 방식과 세금으로 충당되는 베버리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자의 혼합방식을 취하면서 그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개입은 인구고령화와 세계화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형성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빈민으로 전락할 경우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역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발적 가입유도하고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¹⁹⁾

19) 이승렬 외 4인, 전계서, pp. 189-191.

제 3 장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I. 자영업자 현황

우리나라 자영업자에 관련한 현황을 통계청 자료(2010. 8)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을 기준으로 약 100만 명이 창업하고 그 중 80만 명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동안의 생존율이 대략 28%에 불과하며 70%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엇보다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 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8%인 반면, 한국은 그 두 배에 달하는 31.3%에 이르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는 573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4만 명 줄어든데 반하여, 50대 이상은 310만 명으로 같은 기간 68만 5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5년생)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면 청년창업과 더불어 자영업자 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겠다.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에서 정부의 주요정책은 임금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한 것이었고, 자영업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특히, 2005년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빈곤화

위험을 상쇄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질적 효과는 상당히 의문시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및 빈곤문제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⁰⁾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전체매출액에서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감소의 위험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가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 경우 빈곤선의 저소득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²¹⁾

II.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선 명확한 공식통계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미시통계 자료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여부는 각 개인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에 기반을 둔 가입이력과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노후의 연금수급여부와 수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

20) 이승렬 외 4인, 전계서, pp. 227-231.

21) 이승렬 외 4인, 전계서, pp. 131-142.

그러나 이들의 소득에 대한 명확한 공식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의한 소득현황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주와 자영자 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대체로 고용주에 비해 자영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은 통계청의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임금근로자 전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1~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 또한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요식업 분야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는 점은 자영업자의 저조한 국민연금 가입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2003년 25세 이상 60세 미만 개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KLIPS)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59.3%가, 고용주는 67.7%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최근 2011년에는 지역가입자가 총 8,586천명이고 그 중 대략 57.2%(4,914천명)가 납부예외자이며, 13.2%(1,134천명) 정도는 이미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체납자로 파악되었다.²³⁾

2)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타 연금 수급자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국민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국

22) 이승렬 외 4인, 전게서, p. 145.

23) 서재만,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국회예산정책처, 2011. 9, p. 40.

민건강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 및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분류에 따라 1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반면, 고용한 임금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²⁴⁾

가입비율을 보면, 2010년 총 1,923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54.2%(약 1,042만명)이 사업장가입자이고, 45.1%(약 867만명)이 지역가입자, 나머지 0.7%(약 14만명)이 임의가입자 내지 임의계속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⁵⁾

3)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급여종류와 수급요건을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노령연금에 대해서 기존의 국민연금법은 수급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 조기노령, 재직자노령연금, 감액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하였으나, 2012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통합하여 노령연금으로 단일화하고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 2). 또한 연기연금제도를 확대하여 연금지급시기를 60세 이상 65세

24) 서재만, 전계서, p. 33.

25) 윤석명 외 8인, 노후준비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 노후소득 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2011, pp. 40-41.

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7.2%로 상향조정 하였다.

먼저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55세에 도달한 때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전한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60세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완전연금에 비해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60세의 연금수급연령은 1998년 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에서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승된다.

한편, 분할연금은 이혼시 배우자에게 인정된 혼인기간 중의 기여부분에 대한 장래 연금분할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한다. 다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과 60세에 도달할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며, 분할청구권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

(2) 장애급여

장애급여는 장애연금과 장애일시금(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며, 4단계의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된다. 다만 4급의 장애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일시금으로 장애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장애의 병합 또는 장애등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본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월 연금액을 67개월 동안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71조).

(3)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유족급여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나 손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으나, 실제 최우선 순위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이에 대해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동법 제80조).

(4)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도달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가입자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동법 제77조).

4) 연금급여의 산정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에 가족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산정된다. 기본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균등부분과 개인별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소득비례부분을 혼합하여 산출한다. 이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급여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급여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연금액} = \text{기본연금액} \times \text{연금종별지급율 제한율} + \text{부양가족연금액}$$

연금급여의 산정은 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납부 의무의 면제가 인정되고, 면제된 기간은 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추후 납입과 추가산입이 인정된다.

추가산입, 즉 크레딧제도는 출산에 따른 기간과 병역의무 기간에 대해 일부 보험료납입기간으로 추가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2008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5) 연금재정과 국가보조금

(1) 보험료율

국민연금의 재정은 주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사업장 가입자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 즉 기준소득월액의 9% 중 4.5%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동법 제88조 제3항). 반면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 전체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8조 제4항).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가입유형에 관계없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율을 감당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률은 특히 영세자영업자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며 보험가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또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은 사용자의 경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이며, 근로자의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수입인 임금을 말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조).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소득신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축소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과약율은 낮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거나 통지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기초로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결정된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 보험료의 선납

개정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보험료 선납기간을 연장하였다(동법 제58조). 이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3) 국가보조금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은 1995년부터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²⁶⁾ 이에 대해 개정국민연금은 보험료지원을 확대하여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0조의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는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부담 보험료의 1/2 내지 1/3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액은 현재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과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다.²⁷⁾

26) 서재만, 전계서, p. 34.

27)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6. 19), p. 3.

2.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의 도입과 가입현황

(1) 퇴직연금의 도입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의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동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확대·변경하면서 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근퇴법 제24조 제2항 제3호). 다만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은 동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으로써 실제 2017년 7월 26일부터 허용된다(동법 부칙 제6조).

(2) 자영업자의 가입예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달리 2017년 실시 예정인 자영업자의 퇴직연금은 현재로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장래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은 최근 잠재가입자 설문조사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가입한 수가 아닌 잠재적인 가입현황을 예측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56.6%가 장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43.4%가 가입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 가입의향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40대 이상이 20~30대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2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⁸⁾

28) 류건식/김대환,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가입자의 인식 및 니즈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1호, 2012. 2, p. 137.

그러나 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가입의향을 보이고 있다.²⁹⁾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20대는 가입의향이 낮은 반면, 근로자의 경우 30대 이상 연령층의 가입의향이 다소 높으나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연령, 성별, 학력, 건강상태, 주택소유 여부가 가입의사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여부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소득이 높더라도 소득흐름 자체가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³⁰⁾

2)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의 유형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분류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를 일시금 기준으로 할 때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하며, 연금은 종신 또는 5년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수급자에 대한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적합하다.³¹⁾

29)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매년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규모는 대략 381,125억 원, 가입자 수는 약 296만명, 도입한 사업장 수는 약 121,584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광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 2, p. 2).

30) 류건식/김대환, 전게서, pp. 143-145.

31) 하갑래, 전게서, p. 553-554.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DC)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를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계좌에 적립하고, 그 적립금은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운용함으로써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다.³²⁾

(3)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서 연금으로 전환되어 도입된 퇴직연금의 한 형태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보관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퇴직금전용계좌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퇴직계좌와 다른 점은 이직이나 퇴직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납입기간도 10년을 요구한다. 이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에 기인한다.

3)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현행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과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다(근퇴법 제24조 제2항).

32) 하갑래, 전게서, p. 554.

이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업종 전환이나 폐업 등의 사유에 관계없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은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근로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자영업자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준용).

4) 퇴직연금급여

퇴직연금급여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연금급여는 원칙적으로 종신행이지만 가입자 의사에 따라 최소 5년의 지급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연금급여의 수준은 확정기여형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동법 제15조). 다만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5)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동법 제2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 요건이 장기간의 실직이나 주택구입 등으로 한정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

이에 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그 성격상 개인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며, 중도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된 퇴직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이 지급된다.

한편, 기업이 중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의 폐지, 즉 중도해지된 경우 그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이때 중단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는 것으로 본다.³³⁾

6) 재원과 세제혜택

퇴직연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전적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즉 근로자 연간소득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한 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³⁴⁾

33) 하갑래, 전게서, p. 563.

34) 예금자보호법은 보험방식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른 예금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기금으로 환입된다(동법 제31조 제7항).

3. 공적 공제제도

1) 제도의 의의 및 가입현황

2007년 9월 5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일반 중소기업공제가 기업의 경영상의 위기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반하여,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령, 사망 등을 원인으로 한 생계위협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장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한적이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청의 감독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있는 일반 공제제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의 가입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134,970명, 2012년에는 20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된 자산도 2011년 5,800억원에서 2012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³⁵⁾

2) 가입대상 및 공제금 지급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기여금은 월 5만~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고, 은퇴 후 납입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 건설업은 종업원 50인 미만이고, 도·소매

35) http://www.8899.or.kr/jsp/kmn/2009_management.jsp (2012. 8. 20)

및 서비스업은 종업원 10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주점, 무도, 도박, 비의료 안마업종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된 원금은 전액 적립되고 복리이자율이 적용을 받아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³⁶⁾ 공제금의 분할은 5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에 허용되며, 5년, 10년 15년의 기간에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된다.

이러한 공제금은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및 노령 등을 이유로 지급될 수 있으며,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그 밖에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³⁷⁾

3) 소득공제혜택

노란우산공제에의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 예컨대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제1항). 따라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개인연금

1) 의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의 제3층으로서의 개인연금, 즉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의

36)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됨), 분기별 기준이율은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폐업, 사망시 연 3.3%, 퇴임, 노령시 연 3.0%이다.

37) http://www.8899.or.kr/jsp/kma/kma_intro.jsp (2012. 8. 20).

미한다(동법 제86조의 2; 이하 개인연금). 이러한 개인연금은 처음 1994년 ‘개인연금저축’으로 도입되었으나, 2001년부터 ‘연금저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연금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의 한 형태이며, 자영업자에 대해 퇴직연금제도가 확대되는 2017년까지는 공제제도를 제외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유일한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과 더불어 그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 가입현황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현황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계부처는 2009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자 수를 대략 16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령별 가입실태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입율은 35% 이하인데 30대 가입율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가입률은 9.7%에 불과하였다. 그 외 40대가 32.5%, 50대가 25.7%로 나타나 연령별로 개인연금의 가입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연금의 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퇴직금이 없어 근로 소득자에 비해 은퇴준비에 더 취약하다고 하겠다.³⁸⁾

한편, 개인연금을 통한 소득준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인 경우 개인연금 가입비중이 25% 미만이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56.5%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⁹⁾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적립금이 63조 9,924억원에 이르고, 가입자 수가 942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베이비붐세대인 1955년~1963년도 출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4.3%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해 근로소득자의 같은 응답 비율 20.1%보다 높았다.

39) 윤석명 외 8인, 전계서, pp. 59, 73, 83.

만명인 것으로 추계되었다.⁴⁰⁾

3) 연금가입대상 및 연금급여

도입 당시 개인연금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였으나, 2001년부터 연령의 하한을 18세로 변경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시기와 일치시키고 있다.

개인연금의 급여는 10년 이상 월 10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고,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급여는 정기적으로 매월, 분기별, 6개월 내지 매년 지급될 수 있고, 일시금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다.

4) 개인연금의 유형

개인연금은 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형 상품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탁형 상품으로 구분되다.

(1) 보험형 개인연금

보험형 개인연금에서 보험료는 정액납입방식을 취하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형 개인연금은 원리보장형상품으로서 납입된 보험료는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도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한다.⁴¹⁾

연금계약은 주계약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는데, 주계약은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연금인데 반하여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자의 사망 등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다.⁴²⁾ 또한 연금의 지급은 생명

40) 김광목, 전게서, p. 3.

41) 오병국, 개인연금의 이해(5): 금융권역별 신 개인연금의 특징, 금융보험해설, 2011. 8. 22., p. 1.

42) 특별약관은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사망특약, 암보장 특약, 성인병 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실손의료 특약, 질병사망 특약

보험회사의 경우 확정기간형과 종신형으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확정기간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형 개인연금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2) 신탁형 개인연금

신탁형 개인연금의 보험료는 자유납입방식을 취하며, 매월 1만원 이상, 분기 300만원을 가입한도로 한다. 보험형 개인연금과 달리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계획성 있는 적립이 요구된다.

연금급여는 확정기간형으로 지급되지만 보험형 개인연금과 달리 일정기간 확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매번 연금지급 시에 적립액을 잔여 연금지급회수로 나눈 금액이 지급된다(좌수분할식 지급). 또한 신탁형 개인연금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인 은행 연금신탁은 보호대상이 된다.⁴³⁾

(3) 세제 및 감독

개인연금의 재원은 전액 개인의 부담으로 하며,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퇴직연금에 대한 개인의 추가부담금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액은 두 부담을 합산하여 최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1항).

개인연금계약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하는 경우 2%의 해지가산세(주민세 별도)가 추가로 부가된다(동법 제86조의 2 제5항). 중도해지는 보험자인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상품으로 이전할 경우에 계약이전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43) 오병국, 전게서, p. 2.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는 5.5%(주민세 포함)이며, 연금지급액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다만 개인연금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급하거나 5년 미만의 연금급여를 수령할 경우에 세제혜택은 상실하게 된다.⁴⁴⁾ 이러한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44) 오병국, 개인연금의 이해(8): 연금의 세제지원, 금융보험 해설, 보험연구원, 2011. 11. 28, p. 8.

제 4 장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I. 영국

1.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 기본체계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이 높아지면서 노후소득보장은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초는 대체로 공적연금으로 구성하고 있다.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을 제1층 내지 제2층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가연금 내지 국가이층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차이가 공적연금에서 나타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인 국가이층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국가이층연금 가입배제 외에 자영업자의 지위는 국민보험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도 제한되어 있다.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0층과 1층을 구성하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은 급여체계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보장급여시스템과 동일하게 기여형과 비기여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제1층에 귀속되는 기여형 급여는 납부하는 보험료의 유형과 액수가 납부자의 법적지위에 따라 차등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보험료라도 납부의무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려 보험료의 감액을 인정하는 특례가 존재한다. 또한 납부하는 보험료의 유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반면 비기여형 급여는 공공부조형태로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체계의 0층에 해당된다.

〈표 2〉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부가적 기여		
2층	개인연금/스톡홀더연금	확정형/기여형/스톡홀더 기업연금	국가이층연금
1층+0층	기초연금 + 연금크레딧 (보장크레딧 + 저축크레딧)		
	비경제활동 인구	자영업자	근로자

출처 : 김원섭 외 3인, 주요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2006, p. 146.

2) 사적연금체계

영국의 사적연금체계는 임금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스톡홀더연금(Stakeholder Pens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2층을 구성하는 퇴직연금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유형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구분된다.

제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에는 자영업자, 소득활동이 없지만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자, 퇴직연금이 없는 근로자나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⁴⁵⁾

그리고 퇴직연금의 형태로 활동될 수 있는 스톡홀더연금은 1999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혹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설계된 제도이다. 스톡홀더연금이 퇴직연금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개인연금을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유지하게 된다. 또한 2012년 4월 6일부터 국가이층연금 대신 스톡홀더연금으로 적용 대체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2년 4월

45) 연금제도연구실, 외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2011, p. 77.

6일 이전에 스텝홀더연금 가입을 이유로 국가이충연금에 적용제외되었던 자들이 다시 가입자로 전환되었다.⁴⁶⁾

2. 자영업자 관련 현황과 개념

1) 자영업자 관련 현황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과 기존 기업들의 다운사이징 등으로 자영업이 보다 일반화 된 기업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국가들의 자영업 추세는 완만하게 하향 곡면에 있지만, 영국의 자영업비율은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1980년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자영업비율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약 10% (약 490천명)가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피고용인이 2% 증가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⁴⁷⁾

이와 같은 급속한 팽창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하청이나, 외주,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⁴⁸⁾ 등에 있어서 영국 자영업자가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노동시장규제와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자영업자가 되기를 부추기는 유인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영국에서 자영업의 비중도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교육 및 금융보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2003년도에 자영업자 중 5.3%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6%가

46) 연금제도연구실, 전게서, p. 77.

47) 이명숙/김인수, 유럽의 자영업의 변화원인 -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자료에 의한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6. 2, 138, p. 147.

48) 한계세율은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로, 소득의 증가분 중 조세의 증가분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더 높아진다. 이러한 한계세율의 크기가 노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한계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되어 여가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제조업, 65.5%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⁴⁹⁾ 또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 실업수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직자를 지원하여 창업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예비자영업자들에게 사업설립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이들 계획에의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자영업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⁵⁰⁾ 그 밖에 자영업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영업의 비율이 노년층에 높게 나타나고,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됨으로써 그 비율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에서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유형은 작은 규모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대표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청이나 파견근로를 하면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청은 대부분 건설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파견근로는 노무계약이 고용인과 직접 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용인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영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라기보다 저소득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⁵¹⁾ 그리고 이들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득중단의 사고를 당할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빈민으로 전락할 경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크고, 사회적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보험재정에 개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자영업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9) Rebecca Boden, The UK Social Security System for Self-employed People, Employment, 'Social Science and Welfare State' Discussion Paper 2005=104,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WZB), Berlin 2005, p. 9.

50) 이명숙/김인수, 전계서, p. 160.

51) 최영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영국의 실업부조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09. 3, pp. 17-18.

2) 사회보장법상 자영업자 개념

영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정의는 사회보장 보험료 및 급여법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이하 SSCBA)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의 고용형태가 아닌 자로서 고용을 바탕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이다.⁵²⁾ 이는 근로소득자를 먼저 규정하고 그 이외의 자로서 사용자가 아닌 자를 자영업자로 규정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에 대한 규정이 적극적인 형태가 아닌 소극적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염두하고 있는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범주를 확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범주를 확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영국 판례법상 근로자의 지위 인정기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범주에 대한 판례의 견해가 중요하다. 몇 가지 중요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1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만 회사의 업무가 설립자의 개인적인 노무제공을 주된 것으로 할 경우에 자영업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노무제공의 속인적 특징, 즉 경제적 관점에서 영세성으로 인하여 근로자나 사용자와는 다른 규제 혹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전통적 기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증가에 따라 불분명하게 되면서 자영업자의 외향을 가진 근로자(외관자영업자)의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52) a person who is gainfully employed in Great Britain otherwise than in employed earner's employment (whether or not he is also employed in such employment) SSCBA 1992 s2(1)(b).

3.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 현황

1) 국민보험제도

영국은 1911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제정한 이후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보험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 국민보험의 급여는 기여형과 비기여형으로 구분되고, 전자에는 기초연금, 추가연금, 기여형 구직자수당, 기여형 고용지원수당, 모성보호수당, 유족급여, 장애급여가 있다. 후자는 아동급여, 고요보육수당, 소득기초 구직자수당, 소득기초고용지원수당, 근로소득세 크레딧(Working Tax Credit)⁵³⁾, 노령장애수당 또는 장애생활수당, 장애인 돌봄수당, 중장애수당, 산재보험급여, 전쟁미망인연금, 연금크레딧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국민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노령, 장애, 실업, 산재 및 빈곤을 포괄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다만 급여의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영국의 공적연금은 세제를 기반으로 한 기초연금과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소득비례연금(추가연금)의 2층 연금제도로 운영되며, 자영업자는 제1층의 기초연금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제2층의 추가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의 자영업자는 기초연금과 사적개인연금을 통해서만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영국의 국민보험의 가입자는 16세 이상으로 남성은 65세, 여성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0월까지 남녀 모두 66세로 상향 통일될 예정이다.⁵⁴⁾

53) 세액공제제도에 해당된다.

54) The Pension Service, 『State Pension Deferral -your guide』, 2012, p. 5 참조.

2) 납부보험료 및 급여의 유형

영국은 1973년 사회보장법에 처음으로 자영업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수입이 적은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의 수입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행정상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정액제 보험료 납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영국의 국민보험은 납부보험료의 유형에 따라 Class 1, 1A, 1B와 Class 2, 3, 4 등 6가지로 구분된다. 각 납부보험료의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

〈표 3〉 납부보험료 유형

급여	Class 1	Class 2	Class 3
기초연금	지급	지급	지급
추가연금	지급	미지급(아동부양 등 예외)	미지급
기여형구직자수당	지급	미지급(투자형 어부 및 해외개발 노동자 등 예외)	미지급
기여형고용지원수당	지급	지급	미지급
모성보호수당	지급	지급	미지급
유족급여	지급	지급	지급

출처 : 영국 국세 및 관세청 홈페이지(www.hmrc.gov.uk) 게시자료 참조(2012. 7. 24).

우선 Class 1, 2, 3을 기본으로 하여 연계된 급여를 살펴보면, Class 1A와 1B는 연계되는 급여가 없다. 이는 해당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

하지만 수급권자가 사용자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와 급여사이의 직접적인 연계가 없기 때문이다.

Class 4는 Class 2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추가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영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급권의 연계는 Class 2와 같지만 수급액의 차이로 인해 도표 상에는 연계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Class 3는 연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입 하는 임의 보험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일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민보험 크레딧(National Insurance Credits)제도가 적용된다. 국민보험크레딧에는 Class 1 크레딧과 Class 3 크레딧이 있다.

Class 1 크레딧은 납부의무자가 18세를 초과하고 공인된 직업훈련 중에 있는 경우, 법원의 배심원 참여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위법하게 구금된 경우, 질병으로 인해 질병급여를 받은 경우, 연금수급연령이 65세에 근접하여 일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파병에 동반한 가족 등에게 인정된다. 반면, Class 3 크레딧은 납부의무자가 16세에서 18세 사이인 경우, 소득세감면대상자인 경우, 16세 이상의 자로서 12세미만의 아동을 부양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Class 2 또는 Class 4에 대한 크레딧이 아니라 추가연금의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별도의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다.

3)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와 관련된 납부보험료의 유형은 주로 Class 2와 Class 4이다. Class 2는 자영업자가 주 단위로 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며, 2012-2013 회계연도의 보험료는 2.65파운드(약 3,700원)이다. 자

영업자 중 특수한 업종에 속하는 투자자형식의 어부(share fisher)는 매주 3.30파운드(약 5,880원), 해외개발노동자(volunteer development worker)는 매주 5.35파운드(약 9,5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Class 2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납부의무자가 자영업자 1인에 한정되며, 소득수준이나 거주요건이 일정한 경우라면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임의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납부의무의 면제는 장애급여수급자, 모성보호급여수급자, 교도소 등 구금상태에 있는 자 등이며, 연간 소득이 5,595파운드(약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저소득을 이유로 납입이 면제될 수 있다.

Class 4는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연간소득이 7,605파운드(약 1,357원)에서 42,475파운드(약 7,583원) 사이인 경우 소득의 9%, 7,605파운드를 초과하면 소득의 2%를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도 납부의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연금급여연령에 이미 도달한 때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그 밖에 저소득 자영업자로서 Class 2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된 자는 Class 3에 임의 가입하여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Class 2의 납입면제자 역시 임의로 Class 2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Class 3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보장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저소득 자영업자가 Class 2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4) 연금급여

(1) 연금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국민보험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 급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연금급여의 수급자격을 보

면, 우선 연금개혁조치로 인해 수급권자의 출생일에 따라 수급자격기간에 차이를 보인다. 2010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60세에서 65세까지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고 3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전액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2010년 4월 6일 이전에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남성은 44년, 여성은 39년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요구된다. 다만 아동 혹은 장애인 등을 집에서 돌보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연수의 의무보험료 납입기간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인 Home responsibility Protection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에 대해 납입기간이 감경된다.

한편, 연금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납입한 기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0년 4월 6일 이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령 가능한 주당 연금액은 최소 26.86파운드(약 48,000원)에서 최고 107.45파운드(약 191,000원)이고, 남성은 11년에서 44년간, 여성은 10년에서 39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납입기간이 남성은 10년, 여성은 9년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수급권이 없다. 다만 여성은 남편의 기여를 바탕으로 연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급여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완전연금액} \times \text{기여연수} / (\text{근로가능연수} - \text{기여면제연수}) \times 0.9$$

(2)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자격기간, 즉 보험료납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보험료 납부자의 출생연월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금연령에 도달하여야 한다. 연금연령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현재 남성은 65세, 여성은 출생년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이다. 예외적으로 연금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5,564파운드(약 993만원) 이상의 보험료 납입 실적이 있으면 최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자신의 기여를 바탕으로 매주 수령 가능한 기초연금액은 최고 107.45파운드(약 191,000원)이며, 자영업자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기여에 근거하여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의 최고액도 동일하다.

한편, 연금의 수령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증액하는 퇴직연장급여제도(pension deferral)⁵⁵⁾가 있으며, 수령을 미루는 기간이 길수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많을수록 연금액은 증가한다. 추가수령금액은 연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당시에 연금과 함께 지급받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된 추가지급금은 세제부과의 대상이 된다.

(3) 추가연금

국민연금 중 국가이충연금인 추가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수급권이 없다. 그러나 아동의 양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자영업자도 추가연금의 수급권을 가질 수 있다. 즉 자영업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소득지원(income support)을 받던 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책임보호(Home Responsibility Protection; HRP)의 지원을 받는 자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한 추가연금의 수급권을 가질 수 있다.

이에 갈음하여 현재는 아동급여(child benefit)를 받거나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부양자로 인정받은 자(approved foster carer), 주당 20시간 이상 1명 이상의 질병을 가진 자 혹은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에도 추가연금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⁵⁶⁾

(4) 80세 노령연금

연금의 수급대상이 아니거나 수급 연금액이 64.4파운드(약 114,900원) 미만인 자가 80세 이상인 때에는 연금 수급액이 64.4파운드가 될 때

55) 이에 관하여서는 The Pension Service, 『State Pension Deferral-your guide』, 2012 참조.

56) 추가 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161.94파운드(약 289,000원)이다.

까지 그 차액을 보전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80세 노령연금(Over 80 Pension)이라고 한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20년의 기준 기간 중 10년 이상 영국 내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5) 유족급여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국민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Bereavement Payment)과 유족부모수당(Widowed Parent's Allowance), 유족수당(Bereavement Allowance)으로 구성된다.

유족일시금은 배우자 등이 사망할 당시 수급인이 연금수급연령 미만이고, 사망자가 연금수급대상이 아닐 경우에 지급된다.⁵⁷⁾ 반면 유족부모수당은 정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수급인이 연금수급연령 미만이고, 자녀를 부양하거나 부양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된다.⁵⁸⁾ 또한 유족수당은 배우자 등이 사망할 당시 수급인이 45세 이상 연금수령연령 미만이고, 연령에 따라 수당지급액이 달라진다.⁵⁹⁾

5) 연금크레딧

(1) 제도의 의의

영국의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은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한 자가 연금소득이 없거나 그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때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기여성 급여이며, 수급자의 저축 등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급자의 주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장 크레딧(guarantee credit)과 수급자의 저축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 크레딧(savings credit)로 구분된다.

57) 일시금액은 2,000파운드(약 357만)이다.

58) 유족부모수당액은 105.95파운드(약 189,100원)이다.

59) 유족수당액은 45세이면 31.79파운드(약 56,700원), 55세 이상이면 상한인 105.95파운드이다.

이러한 이원적 연금크레딧 제도는 저소득 노령자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인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arantee)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저축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⁰⁾

(2) 보장크레딧

보장 크레딧은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한 자의 수입이 매주 142.70파운드(약 253,200원, 독신) 혹은 217.90파운드(약 387,000원, 커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의 실수입과 위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전제도이다.

(3) 저축크레딧

저축 크레딧은 수령자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계된 제도로서 지원 금액의 산정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우선, 저축 크레딧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적격소득(qualifying income)이 저축액⁶¹⁾을 포함하여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며,⁶²⁾ 이를 저축크레딧 기준금액(savings credit starting point)이라고 한다. 적격소득은 보장크레딧의 계산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공제한 금액이다.⁶³⁾

그리고 적격소득과 저축크레딧 기준금액 차액의 60%인 Amount A를 산정한다.⁶⁴⁾ 적격소득이 적정소득 이하일 경우 Amount A가 바로 저축크레딧금액이 되고, 적정소득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Amount B)

60)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는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Pension Credit』, 2012 참조.

61) 저축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1000파운드를 초과하여 매 500파운드마다 주 1파운드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각종 저축액이 2,300파운드인 자는 매주 3파운드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62) 111.80파운드(약 198,000원) 혹은 178.35파운드(약 316,500원) 이상일 것을 요함.

63) 공제되는 사회보장급여에는 근로소득세 감면액, 장애급여, 기여형 구직자수당, 기여형 고용지원수당, 중장애수당, 모성보호 수당과 양육비지급액이 포함된다.

64) Amount A의 상한은 독신이 18.54파운드(약 32,900원), 커플이 23.73파운드(약 42,100원)로 정해져 있다.

을 Amount A에서 공제한 금액을 저축크레딧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적정소득은 하루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standard amount), 즉 표준소득⁶⁵⁾에 장애, 간병, 주택비용지원 등 일정한 사회보장급여를 포함시켜서 산정한다. 또한 Amount A에서 공제되는 Amount B는 수급자의 총소득에서 적정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40%를 곱한 금액이다.

4. 제도의 한계와 최근 개혁동향

1) 사적연금에 대한 강한 의존성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나 연금크레딧 제도를 통한 최저소득보장과, 국가이충연금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일련의 개혁을 통한 공적연금의 확대 역시 노인빈곤문제 해결이라는 틀을 벗어나 있지 않다. 동시에 사적연금을 강화함으로써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규제의 강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연금제도에서 질병 혹은 장애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민보험크레딧이 운영되고 있지만, 단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자영업자에게 확대되고 있지 않은 제도이다. 이처럼 영국의 자영업자는 전통적으로 보험료 납입에 있어서 근로자보다 엄격한 규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민이충연금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양육이나 장애인 등을 수발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이충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65) 표준소득은 보장크레딧의 상한금액과 동일하다.

그 밖에 영국의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금크레디트를 통한 소득보전 역시 보험에 가입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의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스텝홀더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최근 개혁의 동향

최근의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Act 2012)은 지난 3월 8일에 국왕승인(Royal Assent)을 받은 상태이다. 동 법안은 60세 이상을 위한 복지제도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도입으로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급여수급의 조건성(Conditionality)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통합급여는 근로자의 소득 변화에 맞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소득 증가분의 65%로 단일하게 설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급여 제도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도 그에 맞춰 복지 급여를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제 각각 흩어져 있던 개별 복지급여들도 하나로 묶어 통합하는 한편 소득 보조, 구직자 수당, 고용 및 지원수당 등은 폐지했다.

II. 독일

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 폐질 및 노령보험이 1889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적 복지 국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여전히 선별적인 보장체계에 속

하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전 국민이 하나의 통합된 제도가 아닌 각 직업별로 분리되어 차별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 사무직노동자, 생산직노동자를 비롯한 하나의 직업군이 각각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3층(기둥) 내지 3층 구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비교법적 차원에서 3층을 기준으로 하여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2005년 뤼뮈펜 연금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3층 모델(모델2), 즉 2001년 연금개혁을 기준으로 법정연금(1층), 퇴직연금(2층)과 리스터연금과 뤼뮈펜 연금을 포괄하는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 체계에서 법정연금과 뤼뮈펜 연금을 1층으로 하고 기업연금과 리스터 연금을 2층, 사적개인 연금을 3층으로 하는 3층 체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모델1).

〈표 4〉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모델 1>				<모델 2>			
3 층	사적개인연금(저축)			3 층	사적개인연금(저축)		
					리스터연금/뤼뮈펜연금 (기초연금)		
2 층	퇴직연금/ 리스터 연금			2 층	퇴직연금		
1 층	법정(국민)연금/뤼뮈펜연금(기초연금)			1 층	법정(국민)연금		
0 층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도			0 층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도		
	근로자	자영자	기타 경제활동 인구		근로자	자영자	기타 경제활동 인구

2. 자영업자 관련 현황과 개념

1) 자영업자 관련 현황

지난 수년간 독일의 노동시장은 종속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많은 변동을 초래하였다. 특히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Solo-Selbständige)’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자영업자의 수가 약 4.3백만이었는데 그 중 2.4백만이 1인 자영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⁶⁾

독일에서 자영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내수공업자, 예술가, 저술가, 조산사나 교사 등을 포함하여 약 250,000명의 자영업자가 법정연금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고, 농민을 위한 노령연금(농민연금보험)에 추가적으로 약 17,000명의 자영농민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약 34,000명의 자영업자들은 법정연금에 임의 가입되어 있다.

한편 전통적인 자영업자에 속하는 의사, 변호사, 건축사, 약사, 세무사, 공증인 등은 별도의 직업별 연금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는데 약 350,000명의 자유직업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략 3백만 명의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차 노후빈곤층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약 170,000명의 자영업자는 이미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다른 보험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인다.⁶⁷⁾

66) BMAS, Informationen für die Presse - Das Rentnepakett, 8. April 2012, S. 14.

67) Id., S. 14-15.

2)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개념

독일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은 사회법 제4편 제7조 이하 고용과 자영업에 대한 부분(Beschäftigung und selbständige Tätigkeit)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 제7조 제1항은 ‘고용(Beschäftigung)을 근로관계에 의한 비자영업적인 근로’라고 정의함으로써 네거티브 방식의 소극적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⁶⁸⁾ 따라서 독일 사회법상 자영업은 근로관계상의 근로가 아닌, 즉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영업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비법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상 자영업 및 자영업자에 관한 내용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의미가 주어지며 특정 사례에 대한 판례로 개념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독일에 있어서 자영업자는 ‘자연인으로서 농업 및 임업분야, 상업 또는 자유직업에 종사하며 인격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책임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자’라를 의미한다. 또한 자영업의 유무는 자유로운 서비스관계나 인격적인 종속성의 범주에서 종속적 고용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그러므로 자영업은 자신의 근로시간, 일의 종류와 방법 및 자신의 근로능력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표된다. 그 밖에 자영업에 기인한 소득은 사회법 제4편 제15조 제1항 제1문⁶⁹⁾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이익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이익 외에 농업과 임업 및 영업에 의한 소득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68)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Beschäftigung ist die nichtselbständige Arbeit, insbesondere in einem Arbeitsverhältnis. Anhaltspunkte für eine Beschäftigung sind eine Tätigkeit nach Weisungen und eine Eingliederung in die Arbeitsorganisation des Weisungsgebers (SGB IV §7 I).

69) Arbeitseinkommen ist der nach den allgemeinen Gewinnermittlungsvorschriften des Einkommensteuerrechts ermittelte Gewinn aus einer selbständigen Tätigkeit(SGB IV §15 I S. 1).

3) 자영업자의 분류

1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하고 그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자영업자에는 상공인, 자유직업인, 프리랜서 등이 있으며, 자영업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외관자영업자(Scheinselbständige)도 포함된다.

(1) (소)상공인

독일에서 상공인(Gewerbetreibende)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나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 생산 및 가공업무에 해당하는 직업활동을 의미한다.

(2) 자유직업인

자유직종사자(Freiberufler)에 대하여 아직은 구속력 있는 명확한 법정정의를 존재하지는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직종사자의 개념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자유직업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참가법(Partnerschaftsgesetz; Part G) 제1조 제2항의 정의에 따르면, “자유직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업적인 자격이나 창조적인 재능에 근거하여 위임자의 이익으로 상위유형의 일반적인 서비스를 인격적, 자기책임적, 전문적으로 독립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자유직종사자를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데, 동 조는 소득활동을 직업목록에 있는 직업, 직업목록에 있는 것과 유사한 직업, 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언급된 직업이나 직

업목록에 있는 것과 유사한 직업활동을 하는 자들이 자유직종사자로 간주된다.⁷⁰⁾ 예컨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있다.

(3) 프리랜서

프리랜서(Freelancer)의 개념은 독일에서 자유협업자(Freie Mitarbeiter)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분야인 IT, 소프트웨어, 통신, 광고, 예술 및 문화영역에서 통용된다. 이러한 직업형태는 요식업, 운송업, 자유직종이나 산업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근로자와 달리 자주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상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일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대표적으로 저널리스트, 큐레이터, 음악가, 연주가, 교사 및 강사,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

독일 사회보험법상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인과 엄밀히 구분된다. 자유직업인들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또는 사원일 수 있으나 그 신분은 다르지 않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개념정의는 특히 외관자영업자 문제와 연결되는데, 대체로 전문직이며, 근로조건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계약상대방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 프리랜서로서의 표시가 아직은 사회보험법적 범주에서 자영업활동의 개시가 정당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4) 외관자영업자

독일의 외관자영업자(Scheinselbständige)는 외관상으로만 자영업자로 등장하거나 표현상 자영업자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외관자영업자는 자문업 및 언론에 종사하는 자유직업인, 건설업의 하도급업무를 담당

70) 소득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목록은 자유직종을 크게 의료직, 법률·조세·경제자문직, 기술 및 자연과학직, 예술가·언론출판인·교육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는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전자, 외근업무가 많은 보험대리상, 상품홍보 및 진열대물품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 간병 등 요양관련 업무종사자, 재택근로자, 프랜차이즈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수탁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위탁자(사업주)와 수탁자(자영업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독일 사회보험은 형식적 합의내용과 실제적 계약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형식적 합의 보다 노동활동의 실제적 관계를 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관자영업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외관자영업과의 투쟁’라는 이름으로 외관자영업자를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파악해 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단행하였고, 판례 역시 자영업활동과 종속적 취업의 구별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표지를 발전시켜왔다.⁷¹⁾ 이러한 판단의 표지로는 인적종속성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한과 사업조직에의 편입, 타인에의 위임권한의 부재, 위탁사업주의 포괄적인 감독(통제)권 및 발언권, 포괄적인 보고의무,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근로자의 불채용, 고유한 사업조직과 생산수단의 부재 또는 위탁사업주의 금융지원 내지 대차에 의하여 사업조직이나 생산수단의 조달, 독점 및 전속조항,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만의 로고와 명칭사용금지 등이 있다.

취업자인지 자영업자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자(독일연금보험연합)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지위확인절차에 의한 결정은 불확실한 법률관계의 내용을 확인하는 유권적 판단으로서 다른 사회보험에도 효력을 미친다.

71) 1999년 외관자영업과의 투쟁의 종식을 기치로 사회법전 제4편 제7조 취업자 정의를 개정하여 사회보험에 관하여 제한적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취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추정에 관한 기준을 법정화하기에 이르렀다(BGBI 1998 S. 3843 ff.). 그러나 2002년 동 규정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후단에 “취업의 판단근거는 지시권자(계약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지시권자의 노동조직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추정규정).”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지휘명령관계와 노동조직편입이라는 판례상 발전된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취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복귀하였다(BGBI 2002 S. 4621).

(5) 유사근로자

독일 노동법상 유사근로자(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arbeitnehmerähnliche Selbstständige)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이고 근로자와 비교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대부분 누군가를 위해 활동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단체협약법 제12a조). 이들은 인격적인 종속성의 결여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경제적인 종속성으로 전통적인 자영업자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사회보험법은 자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고, 지속적이고 본질적으로 위탁자를 위해 활동하는 자들을 자영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이들은 외관자영업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로 인정되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보험가입 의무자가 된다(사회법 제6편 제2조 제9호).

이러한 유사근로자는 외관자영업자와의 경계에 위치하며, 주로 언론 분야의 재택근로자, 상사대리인과 보험대리인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관자영업자와 달리 자영업자 추정규정(Vermutungsregelung)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원칙적으로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한다(단체협약법 제12a조; 연방휴가법 제3조 제2문; 임금계속지급법 제1조와 제2조; 휴가수당법 제2조; 노동법원법 제5조).

3.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 현황

1) 자영업자를 위한 보장체계

독일 사회보험제도는 자영업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범주적 체계를 보이며 그 직업의 범주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즉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원칙보다 집단별로 비통일적 포섭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인정

되지 않지만, 법정연금보험의 경우 일부자영업자에 대한 의무적 특별 가입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제한적 범위에서 (25%) 자영업자의 당연가입을 인정하고 있다(사회법 제7편 제2조, 제3조).

2)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사업자 및 자유직업인을 포괄하는 독일의 자영업자는 사회보험의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임의가입을 통해 사회보험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할 때 경제적 상황은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예컨대 가내수공업자, 교사나 교육자, 조산사, 산후조리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사회법 제6권 제 12조 제1항과 제2항;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8호).

특히 자영예술가와 언론출판인에 대해서는 1983년 1월 1일부터 그들과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하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의무가입이 허용되고 있다(예술가사회보험법 제1, 2, 61조; 사회법 제6권 제2조 제5호). 다만 상당수의 예외적인 사유들을 두고 있다(예술가사회보험법 제4조 내지 7조).

또한 수공업자명부에 등록된 자영수공업자들 역시 연금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자이다(사회법 제6권 제2조 제8호와 사회법 제7권 제3조). 큰 규모의 자영업자 그룹인 농업경영자들도 일반자영업자와 같이 장애, 노령 및 사망에 대한 위험에 대해 연금보험에서 보호된다(예술가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2호; 사회법 제7권 제2조 제1항 제5호; 사회법 제6권 제2조 제2항 제4호).

한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종류의 의무보험은 1972년 이후 연금보험에 포함되었다(사회법 제6권 제4조). 동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법률상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는 자영업 활동을 임시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영업활동 개시 후 5년 이내에 의무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의무가입자가 될 수 있다(사회법 제6권 제5조 제2항). 5년의 기한이 없다면, 위험부담이 커진 시점에 보험가입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의 발생 후에는 이러한 보험이 임의적이다. 왜냐하면 보험관계가 이미 법률상 보험의무가 있는 행위의 이행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도 그 내용에 따르면 모든 부담과 이익을 수반하는 의무보험과 동일하다. 즉 특히 부담에는 정기적으로 급여의무,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임의적인 탈퇴 가능성의 부재 등이 있고, 이익에는 예컨대 보험의무가 있는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보험료 면제기간의 산정이 포함된다. 자영업자가 이러한 부담과 조건을 기피한다면, 당연히 혜택이 적은 임의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⁷²⁾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 보험의무가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그 회사에 종사하는 부부에게 확장될 수 있다(사회법 제7권 제3조). 또한 실업보험의 경우 자영업자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데, 자영업 활동 전 24개월 중 12개월 동안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던 자영업자들의 실업보험 가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⁷³⁾

3) 법정연금보험

(1) 가입의무가 있는 자영업자

독일의 공적연금인 법정연금보험의 가입자는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분류된다. 당연 가입자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병역 및 사회봉사종사자, 일정소득 이상의 학생, 실업 및 상병급여 등 사회급여 수급자, 무급개호종사로 인해 소득활동을 중단한 자, 일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사회법 제6편 제2조 제1호-제10호).

72) Bley/Kreikebohm/Marschner, Sozialrecht, 2007, Rn. 355.

73) Bley/Kreikebohm/Marschner, a. a. O., Rn. 356.

동조에 따르면 법정연금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있는 자영업자에는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교사, 강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조산사, ‘해상안내원제도에 관한 법률’상의 해상안내원, ‘예술가사회보험법’에 따른 예술가와 저술가, 가내수공업자, 연안운행선박의 선주와 연안어업종사자로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 상공인 등록부에 등재된 상공인으로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 자영업자로 활동하면서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간 주로 특정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고용보험으로부터 창업지원금의 수급기간 중에 있는 자들이 속한다.

그 밖에 임의가입자는 당연가입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이며, 16세 이상으로 독일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와 공적연금에 6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부양제도 가입자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불가하다.

(2) 수급조건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은 원칙적으로 최소 5년 이상 가입하고 65세에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29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표준 수급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승되고, 1964년 이후 출생한 모든 자들에 대해 수급연령이 67세로 적용된다.

(3)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법정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노령연금, 소득능력감소연금, 유족연금 및 재활급여 등이 있다. 재활급여는 피보험자가 부상이나 정신, 육체, 심리적 장애로 인해 소득능력이 감소한 경우, 소질과 능력을 회복시켜 사회에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조치, 직업알선, 부가급여 등이 일반적인 연금급여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령연금은 5년 이상 가입하고 65세에 도달 한 때 기본연금액의 100%가 지급된다. 다만 35년 이상 장기가입자, 20년 이상 장기가입 장애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되 기본연금액에서 감액지급된다. 이러한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3년간의 혼인생활 이후 이혼할 경우 분할 지급될 수 있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이후 결혼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하였으나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들은 유족연금 대신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모두 25년간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분할대상은 혼인기간에 적립된 연금수급권에 한한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연금과 자녀연금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연금은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사망시 그 유족배우자가 47세 이상, 혹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망한 피보험자의 기본연금액의 55%를 지급한다(우대배우자연금). 그 외에 유족배우자가 5년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기본연금액의 25%가 지급된다(일반 배우자연금).

자녀연금은 부모 모두 사망한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27세까지 피보험자 기본연금액의 20%를 지급하고 한 쪽만 사망한 경우에는 10%를 지급한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은 질병이나 장애를 원인으로 소득활동능력이 감소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며, 근로가능시간에 따라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일 3시간미만의 근로가능)과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일 3~6시간의 근로가능)으로 구분된다. 또한 장애발생 전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근 5년 동안 최소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지급된다.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으로 기본연금액의 100%,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으로 50%를 지급한다.

이러한 법정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동안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아동수당 수급권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지급된다. 기본적인 연금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기본연금액(월)} = \text{개인별 소득점수} \times \text{연금종별 적용률} \times \text{연금실질가치 유지액}$$

$$MR = pEp(Ep \times Zp) \times Raf \times aRw$$

(4) 재정 및 운영

독일의 법정연금보험의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당해 연도의 지출은 전액 보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기준 보험료율은 19.9%이며, 근로자의 경우 노사균등부담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노동사회부가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연금공단(DRV-Bund)이 수급자격 및 급여를 관리하고, 건강보험조합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4) 자영업자의 기본연금

(1) 기본연금으로서의 뤼룹연금

2005년 노후재산법(AltEinkG)을 통해 도입된 뤼룹연금(Rürup-Rente)은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기본연금(Basisrente)으로 구상된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의 일종이다.⁷⁴⁾ 가입자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의무자들을 포함하지만, 주로 연금보험의 의무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74) 뤼룹연금이란 명칭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 위원회(Kommission für die Nachhaltigkeit in der Finanzierung der sozialen Sicherungssysteme), 즉 뤼룹위원회(Rürup-Kommission)의 장이었던 경제학자 Bert Rürup의 이름에서 기인한다.

독일에서 자영업자들은 통상 1층과 2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2005년 이후 개인연금보험이나 저축성 생명보험이 더 이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게 되면서 현재는 뮌헨연금이 유일한 세제혜택이 있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기본연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뮌헨연금의 국가적 지원을 위해서는 납입된 보험료가 매월 종신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하지만, 60세에 도달하기 전에는 지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2012년부터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연금지급은 연금지급연령조정법(RV-Altersgrenzeanpassungsgesetz) 제10조의 적용으로 62세부터 시작된다.

(2) 연금계약

뮌헨연금계약은 보험회사에서만 체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보험형과 펀드형 연금보험형으로 제공된다. 또한 뮌헨연금계약은 해지할 수 없고, 종신계약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납입될 수 없을 경우 보험료의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에 상응하여 연금액이 감소된다.

뮌헨연금계약의 수급권은 법률상 상속될 수 없고,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일시금으로도 지급될 수 없다(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b). 다만 소액연금의 경우 지급액이 월 수령액의 1% 미만일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소득세법 제93조 제3항 제2문).⁷⁵⁾

그 밖에 뮌헨연금은 유족연금과 직업불능연금(Berufsunfähigkeitsrente)을 통해 보충될 수 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보조금(Kindergeld)을 수령하는 자녀를 위해서 상속이 가능하며, 자녀에 대해 학업이 종료할 때까지 혹은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지급이 지급된다. 한편

75) 2008년도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은 24.85 유로였다. 이는 법정 평균임금에 상응하여 책정되는 월 수령액 2,485 유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직업불능연금이 워플연금과 결합하여 체결될 경우 직업불능연금 보험료 납입으로 워플연금 보험료 납입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직업불능연금의 보험료부분이 워플연금 보험료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납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⁷⁶⁾

(3) 세제지원

워플연금의 본질적인 장점은 세제지원에 있다. 그러나 그 지원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사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워플지원은 높은 조세부담을 안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유익하다. 납입된 보험료는 법정 상한의 범주에서 2005년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면세혜택의 특별지출로 주장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b). 법정상한액은 미혼자는 2만유로, 기혼자의 경우 4만 유로이다.

반면, 워플연금에 기한 급여는 동일한 조세부과율에 따라 법정연금과 동일하게 세제를 부담한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호, 제19조 제2항). 2040년까지 조세부과율이 50%에서 100%까지 상향되는데, 2020년까지 매년 2%씩, 그 이후에는 매년 1%씩 상승한다.⁷⁷⁾

4. 제도의 한계와 최근 개혁동향

1) 제도의 한계

독일의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법정연금 가입의무를 인정하고, 고소득의 자영업자는 사적연금인 워플연금을 통해서 보장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자영업자의 노후는 국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자영업자의 등장

76) Opoczynski, ZDF WISO: Altersvorsorge-Berater, 2007, S. 86.

77) Vgl. Kim, Alterssicherung in Korea und Deutschland im Vergleich, Diss., 2010, p. 102 ff.

과 저소득 자영업자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영업자에 일반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다층체계에 입각하여 기본연금의 기능을 하는 뤼릅연금 외에 근로자성을 갖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연금으로서의 리스터 연금(Riester-Rente)이 있으나, 이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소득보장의 2층으로서의 퇴직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제 3층의 개인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뤼릅연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와 같이 독일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제1층 법정연금의 예외적 가입의무와 제3층의 뤼릅연금에 의한 보장에 한정되어 있으며, 뤼릅연금 조차 그 특성상 가입율이 그다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최근 개혁동향

독일정부는 지난 2012년 3월 22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노후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다.⁷⁸⁾ 자영업자를 위한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⁹⁾

① 법정연금 가입의무를 모든 자영업자에게 확대한다. 다만 이미 예술가, 저술가, 농민과 같이 별도의 연금보험이나 변호사, 약사, 건축사와 같이 직업별 연금보험에 가입된 자들은 예외로 한다. ② 연금수급연령에 근접한 시기(58세 이상)에 자영업을 개시하고 부업으로 혹은 매월 400유로의 적은 소득이 있는 자들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폭넓은 경과규정을 둬으로써 현재 이미 50세 이상인 자들은 의무

78) 2011년 가을부터 시작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는 노조, 사용자, 복지연합단체, 정책전문가, 연금공단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진행된 바 있다.

79) BMAS, Informationen für die Presse - Das Rentnepakett, 8. April 2012, S. 15-16.

가입이 면제된다. 그리고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노후준비를 하거나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실제적인 경과규정). 따라서 30세 이하인 자들이 완전한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④ 노후를 대비한 연금가입 의무는 기본보장 수준까지, 즉 노후기초보장 이상으로 적용된다. ⑤ 노후준비금과 그 이자는 상속, 양도, 대여, 담보될 수 없고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없다. 노후보장은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⑥ 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은 유연한 보험료 납부가능성과 창업초기의 보험료면제를 통해 고려되어 진다. 이러한 보험료 납입의 면제나 완화는 창업을 지원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창업이 안정적인 시기에 이르게 된 때 완전한 보험가입의무가 개시된다. ⑦ 일반적인 연금가입의무의 도입에 반하여 기존의 자영업자에 대한 법정연금보험 가입의무규정은 폐지된다(특히 가내수공업자의 의무가입규정). ⑧ 독일연금연합이 중앙기관으로 제도를 시행할 권한이 있다.

Ⅲ. 시사점

1. 영 국

영국은 세액공제조치를 도입한 이후 세제와 사회보장자산조사의 연계성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부정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은 우선 공적연금체제로 이들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영국의 세액공제조치와 같은 세제혜택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향상과 부정수급 문제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기초보장을 바탕으로 형성된 영국의 최근 복지개혁법안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⁸⁰⁾

80) 임완섭, 영국의 복지개혁: 일하는 복지(welfare that works)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1. 3, pp. 77-78.

우선, 우리도 근로유인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보충 및 통합급여방식으로 지급되어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경향이 크고, 자활사업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전체수급자의 비중에서 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수급조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등 여러 제도에서 각각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수급조건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실효성 없는 규제로만 남아있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수급조건 강화는 대상 집단의 반말 및 행정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수준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 축소 및 각종 위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복지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제도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더라도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사전적 준비나 장기적인 재정 전망 없이 무분별하게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증가하는 복지지출은 결국 국민부담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연계복지와 같은 맥락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빈곤을 방지하는 한편, 재정적 부담능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독일

독일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사회적 보장의 필요성도 근로자에 비해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 중 일부 그룹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편입시키거나 특별보장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의 사회보장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보충해 왔고,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인 고유한 보장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로 인해 특정 인적집단의 보호필요성은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한 반면,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통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집단의 이질성의 심화, 즉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의 포섭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보험가입의무를 발전시켜 기초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해 노후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보장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기초보장방식의 보험가입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상의 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별적 판단에 따른 선택가능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독일 정부는 최근 연금개혁안을 통해 기존의 사회보장체제나 개별적 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법정연금 가입의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공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

라서 동 개혁안이 실시되는 2013년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취업자연금보험제도(Erwerbstätigenversicherung)가 기존 보험제도에 가입된 자영업자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실시된다. 또한 연금개혁안은 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과 창업초기의 가입면제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제 5 장 문제점 및 개선과제

I. 자영업자의 개념규정

1. 문제점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특히 노후빈곤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노후소득보장의 문제가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 그에 앞서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장법은 그 취지상 보호대상의 특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보호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률상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은 입법의 불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자영업자 개념은 경제활동인구에 관한 통계조사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통상의 인식을 토대로 자영업자를 지칭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를 범주화 하면, 자영업자는 우선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되고, 자영업주는 다시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자기 혼자 일하는 자영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 자영업자나 자영업주, 자영인,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용어들이 별다른 구분 없이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2. 개선과제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정의는 적극적이기 보다 소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영업자 개념이 근로자

개념과 달리 자영업자에 대한 인식과 범위가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영국과 독일의 입법 역시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관계나 근로자와 비교하여 소극적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영국은 근로소득자의 고용형태가 아닌 자로서 고용을 바탕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 독일은 자영업이 근로관계상의 근로가 아니며 고용에 의하지 않은 독자적인 소득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사회보장법상 자영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소극적 형태로 명문화하되, 자영인이나 자영자 보다 자영업자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혼동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범주에 통상의 자영업자 외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특별히 고용인 없이 단독으로 일하는 자는 1인 자영업자로 구분한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인 자영업자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여 사회보장법적 보호의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하는 관련 법률들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규범의 명확화에 기여할 수 있다.

II. 국민연금법의 개선

1.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16.7%에 불과하며, 공사연금 어디에도 가입되지 않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임이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수준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

장의 가입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율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율은 저조하게 나타난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이 특히 크게 작용하는 반면 고소득의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빈곤층 내지 차상위계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빈곤의 가속화와 더불어 두터운 노인빈곤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개선과제

국가의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의 실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우선, 현재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험료의 국가지원을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보다 현실성 있는 소득과약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국세청과의 협력에 의하여 신고소득 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인식된다.⁸¹⁾

한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확대 이외에 자영업자 가구의 무급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확대). 적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자영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입기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81)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체계에 대한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즉 현행 보험료 선납제와 같은 제도를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국민연금법 제58조의 확대). 또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등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와 사회가 미리 분산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사적연금 관련법의 개선

1. 공·사연금제도의 총괄보장

1) 문제점

2000년 이후 일련의 개혁을 통해 다층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었고 어느 정도 제도의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제도가 추구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국민이나 근로계층 간 또는 피용자와 자영업자 간의 기여율과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제도적 일관성은 미흡하여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조사에 따르면, 35년 가입을 기준으로 적정소득대체율은 약 65%이고, 예상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35%, 퇴직연금이 12.5%, 개인연금이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5%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제기구에 권고하는 있는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⁸²⁾

82) 류건식/이봉주/김동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보험학회지, 2009, p. 115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은 국민연금(9%)과 퇴직연금(8.3%)의 노사공동기여율이 17.3%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비효율적 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³⁾

그러므로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의 제도적 연계나 소득보장기능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시급한 시점에 놓여 있다.

2) 개선과제

노후소득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연계가 중요한 개선과제이다. 즉 공·사연금을 총괄하여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다층체계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제도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제도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괄보장의 취지에서 적정소득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70%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0%, 퇴직연금이 22%, 개인연금이 8%에는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소득대체율은 실제 55%에 불과한 예상소득대체율을 10%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실현방안을 필요로 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성이 있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연금형태로 전환된 것인 만큼 기업의 임의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사적 퇴직연금과 달리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인 점에서 퇴직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폐업에 따른 노후소득상실

83) 류건식/이창우/김동겸,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2009. 3, p. 59.

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스스로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에게 연금가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키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가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자영업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입제도에 대한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2.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1) 문제점

현행 노후소득보장법제는 주로 근로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점진적인 확대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진적 확대과정에서 근로자 중심의 제도가 자영업자에게 단순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는 직장이동 및 단기 근속자의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 비정규직의 확산, 자영업 진출의 확산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화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나타난다. 특히 자영업자의 증가는 근로자 중심이 아닌 자영업자를 위한 독자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현행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이 자영업자에게 확대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퇴직연금의 분리운영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제도와 같은 공적 공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제도의 통합운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실

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적 공제제도의 역할이 축소 내지 폐지되고 퇴직연금 가입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급권보장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시점에서 퇴직연금 보다 공적 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개선과제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은 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인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와 다른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추후납입 등을 인정하여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제도 내적인 유인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나 중도해지의 불이익이 없도록 중간정산 사유의 완화나 해지가산세의 감면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다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자영업자의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공적 공제제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적 공제제도를 퇴직연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 및 지급보장 장치의 확충과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사적연금의 활성화와 세법개정

1) 문제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해 연금 납입액 전액, 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급 시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추후과세 내지 이연과세). 이는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존의 300만원에서 증액된 것이지만 그 증액의 폭이 크지 않아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1항, 제5항).

그리고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에 대한 비용이 부가되고,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세율 10%의 두 배인 기타소득세율 2%가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가입의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수 있는 반면, 중도해지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⁸⁴⁾

2) 개선과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인책이 된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입법안인 2011년 10월 31일 의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확대금액을 800만원으로 계산하였다(동 법안 제86조의 2).

이를 전제로 같은 날 의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연금소득공제의 공제율과 상한액을 조정함으로써 공제금액을

84) 류건식/이창우/김동겸, 전거서, p. 54.

〈표 6〉 소득세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연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5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연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00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 </tr> </tbody> </table> <p>② (생략)</p> <p>제51조의3(연금보험료 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p> <p>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p>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p>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_____ _____ _____ _____ 1,200만원 _____ _____ 1,200만원 _____ _____</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연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연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00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820만원+(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 </tr> </tbody> </table> <p>② (생략)</p> <p>제51조의3(연금보험료 공제)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 2. (현행과 같음) _____ 3. _____ _____ _____ _____</p>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연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0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7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600만원 초과	820만원+(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연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0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7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600만원 초과	820만원+(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현 행	개정안
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해당 금액이 연 800만원. _____ _____ _____

이상과 같이 동 법안에서 제안한 800만원의 공제한도와 연금소득공제액을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인 30%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주장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35년 가입을 기준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월수급액을 산출한 결과가 각각 914,000원과 552,000원이라는 조사를 고려하면 분명히 보험료 및 연금수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상한은 현재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⁸⁵⁾

소득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동 법안과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규정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공제액을 정할 수도 있다. 특히 퇴직연금에의 자영업자 가입이 허용되는 시점에서는 양자의 합산에 의한 공제방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각각의 소득공제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개선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⁸⁶⁾

그 밖에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소득공제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및 자녀의 유무, 연령, 소득, 직업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소득공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연금과세체계의 재검토 및 전면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85) 류건식/이봉주/김동겸, 전거서, p. 113.

86) 금융위원회,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 보도자료, 2010. 12. 20, p. 5.

4. 근로장려세제의 활용과 세법개정

1) 문제점

전통적으로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보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적인 납입여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보다 여력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역진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⁸⁷⁾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40대 이후 은퇴를 준비하거나 조기 은퇴자들이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수가 증가하면서 불안한 노후소득에 대한 위기의식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국가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2) 개선과제

(1) 근로장려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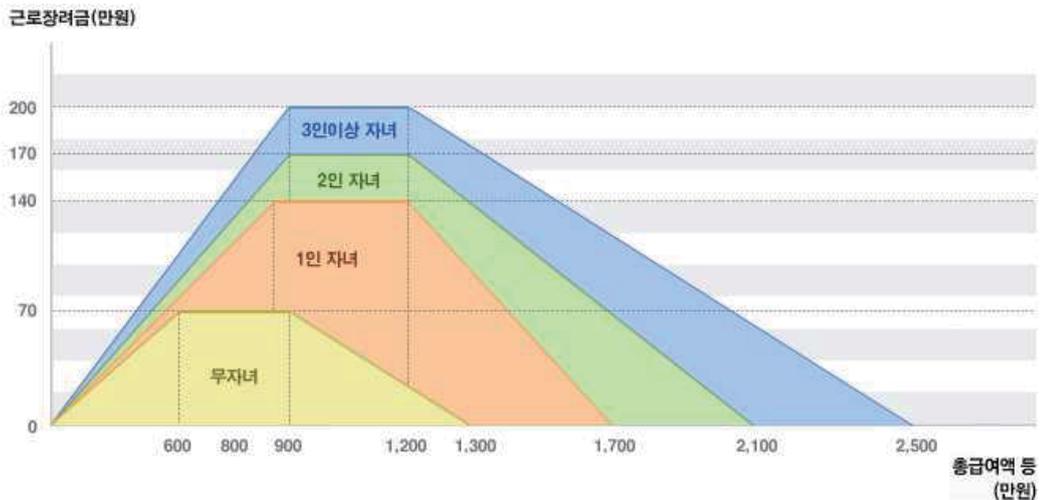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득과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혜택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이 투명하게 파악될 것이 전제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활용 가능한 좋은 선례로는 영국의 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들 수 있다.

8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받게 되는 세제혜택이 과세표준 기간을 중심으로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만원이지만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광목, 전계서, p. 5 참조).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이하).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을 것, ② 총소득이 부부합산하여 기준금액 미만일 것, ③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1채, ④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⑤ 신청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⁸⁸⁾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지급제한 및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표 7〉 부양자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www.eitc.go.kr) 게시자료 참조(2012.8.27.)

88) 신청제외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와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해당된다(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 제2항).

〈표 8〉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0명	1천 300만원 미만	70만원
1명	1천 700만원 미만	140만원
2명	2천 100만원 미만	170만원
3명 이상	2천 500만원 미만	200만원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www.eitc.go.kr) 게시자료 참조(2012.8.27)

이러한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을 위해서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한 확인조사권한과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및 타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동 법 제100조의11, 12, 13).

(2) 근로장려세제의 활용방안

근로장려세제는 세제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의 강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성 및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과 같은 사업자, 즉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확대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소득과 자녀의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한 것은 독일 사적연금제도인 리스터 연금의 국가지원을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리스터 연금(Riester-Rente)은 인증제 개인연금으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사적연금제도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보조금(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한 제도이다. 이러한 리스터 연금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은 주로 소득세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스터 연금의 도입에 관한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터 연금과 같은 인증제 개인연금의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면, 현행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소득 및 자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제도를 사회보험료 지원과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어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조속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확대개정이 필요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적연금기능이 공적연금의 대체 또는 보완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사적연금의 가입의무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공적연금의 대체기능은 영국과 같이 공적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제외 등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보완기능은 독일과 같이 공적연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원칙적으로 기초보장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자영업자를 일반보장체계 안에서 포섭하여 어느 정도 보편적 보장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급여의 축소에 따른 사적연금의 역할은 공적연금의 보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공·사연금을 총괄하는 보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로서 시도한 사회보장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정의는 사회적 보호대상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 실현의 목적과 연결된다. 즉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사연금체계를 총괄하는 적정소득대체율을 실현하고, 연금사각지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3층의 연금가입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기여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실현시킬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연금사각지대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국민연금가입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이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공제나 국가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유도 뿐만 아니라 제도 내적인 구조개혁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이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하여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사적연금의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자 퇴직연금의 분리운영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통한 제도화 및 기존 법령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광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 2.
- 김상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2009. 5.
- 김수완 · 김상진, 자영업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 · 사연금 가입형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2012.
- 김원섭 외 3인, 주요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 · 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2006.
- 금재호 외 3인,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I) - 자영업 변화 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2009.
- 노화봉 외 4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및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한국소상공인학회, 2010.9.
- 류건식 · 김대환,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가입자의 인식 및 니즈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1호, 2012.
- 류건식 · 이봉주 · 김동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수준 평가, 보험학회지 제83집, 한국보험학회, 2009.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2009. 3.
- 반정호,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2012.
- 서재만,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국회예산정책처, 2011. 9.
- 성지미,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경력 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 노동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11.

- 연금제도연구실, 외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국민연금연구원, 2011.
- 윤석명 외 8인, 노후준비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이명숙·김인수, 유럽의 자영업의 변화원인 - 영국, 독일 및 프랑
스의 자료에 의한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6. 2.
- 이승렬·박찬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한국노동
연구원, 2008. 12.
- 이승렬,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노동부, 2008.
- _____,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2011.
- 이승렬 외 4인,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I)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이병희, 자영업 구조조정과 임금근로 전환의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
장연구 제28권 제1호, 2012. 2.
- 임완섭, 영국의 복지개혁: 일하는 복지(welfare that works)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1. 3.
- 장지연 외 5인,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한국노동
연구원 2011.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 최영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영국의 실업부조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09. 3.
-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2.
- Paul Schoukens, 자영업자의 실업위험보장 - EU 사례연구, 국제노동
브리프, 2009. 3.

[보도자료 외]

- 국세 및 관세청 홈페이지(www.hmrc.gov.uk) 게시자료, 2012. 7. 24.
고용노동부(www.moel.go.kr), 보도자료, 2012. 1. 18.
고용노동부(www.moel.go.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6. 19.
금융위원회(www.fsc.go.kr),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 보도자료, 2010.12.20.
노란우산공제제도 홈페이지(http://www.8899.or.kr/jsp/kma/kma_intro.jsp),
2012. 8. 20.

[외국문헌]

- Betzelt, Sigrid · Fachinger, Uwe, Selbständige - arm im Alter? Für eine
Absicherung Selbständiger in der GRV Heft 6/2004.
Bley · Kreikebohm · Marschner, Sozialrecht, C. F. Müller, 2007.
BMAS, Informationen für die Presse - Das Rentnepaket, 8. April 2012.
Choi, Jongkyun, Pension schemes for the self-employed in OECD
countrie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ir.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2009.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Pension Credit』, 2012.
Dina Frommert und Brigitte L. Loose, Integration ungesicherter
Selbständigkeit in die GRV: notwendige Weiterentwicklung der
Alterssicherung in Bismarck-Tradition?, In: Sozialer Fortschritt,
Bd. 58. 2009.
Fachinger, Uwe · Frankus, Anna, Sozialpolitische Probleme bei der
Eingliederung von Selbständigen in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참 고 문 헌

- Bonn: Friedrich-Ebert-Stiftung, Abt.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2011.
- Kim, Youngmi, Alterssicherung in Korea und Deutschland im Vergleich, Diss., Uni-Jena, 2010. 9. 21.
- Müller, Christoph, Bernd Raffelhüschen, Demografischer Wandel: künftige Handlungsoptionen für die deutsche Rentenpolitik, Bonn: IZA, 2011.
- Opoczynski, Michael, ZDF WISO: Altersvorsorge-Berater, 2007.
- Pohlmann, Isabell, Altersvorsorge für Selbständige, 2. Auflage, Stiftung Warentest, 2010.
- The Pension Service, 『State Pension Deferral-your guide』, 2012.
- Wirth, Christian · Müllenmeister-Faust, Uwe, Die Alterssicherung Selbständiger in Deutschland und in Europa - Stand und Perspektiven, In: Sozialer Fortschritt, 2009.
- Ziegelmeier, Michael, Das Altersvorsorge-Verhalten von Selbständigen: eine Analyse auf Basis der SAVE-Daten, In: Schmollers Jahrbuch, Bd. 1, 2010.